

# (사)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

## 2022년 1차 임시 이사회

---

○ 일시 : 2022년 5월 17일(화) 12시

---

○ 장소 : 광주518행사위 회의실(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45 전일빌딩 245 4층)

---

○ 참여방법: 다자간 영상통화 방식

(Zoom 통한 온라인 진행) <https://us06web.zoom.us/j/85467708023>

---

# (사)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

# [사]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

## 2022년 임시 1차 이사회 안건 목차

### ▶ 성원보고 및 개회

이사회 성원 보고 및 개회 선언 ..... 3

### ▶ 보고 안건

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법인 설립 경과 .....4

기타 보고 사안 .....5

### ▶ 심의 안건

심의안건1.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지부, 지회설립 관한 건 .....6

심의안건2.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단체 가입에 관한 건 .....7

심의안건3. 회원모집 및 회비운영에 관한 건 .....8

심의안건4. 사무국 설치에 관한 건 .....9

심의안건5. 주관, 주최 명의에 관한 건 .....10

### ▶ 참조

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정관 .....11

# 개회

# 이사회 성원 보고 및 개회 선언

## <개회선언>

(사)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정관 제35조(의결정족수)에 의거하여  
이사회 성원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합니다.

## 1. 이사회 명단

연번	직위	성명	소속단체	참석유무
1	대표	권달주	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	
2	부대표	정기열	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	
3	부대표	박경석	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	
4	이사	임경미	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	
5	이사	김용섭	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	
6	이사	박대희	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	

# 보고안건1

#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법인 설립 경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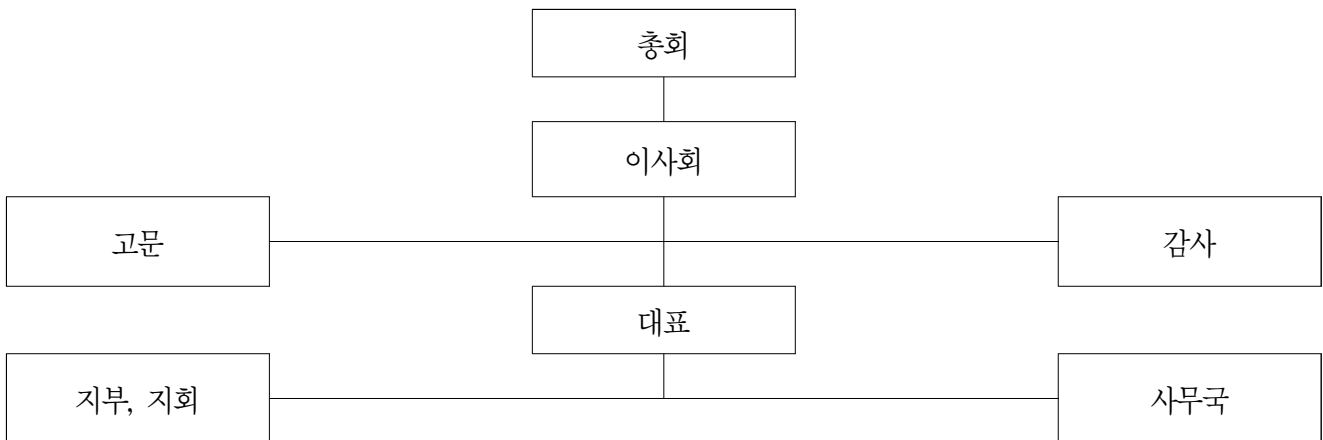
<주문 사항>

(사)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의 법인 설립 경과를 보고합니다.

## 1.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법인 설립 추진 경과 보고

- 2022.03.03.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법인 신청서류 접수
- 2022.04.30. 국토교통부 사단법인 설립 허가 승인
- 2022.05.16. (사)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법인 설립 등기 신청
- 2022.05.20. (사)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법인 설립 등기 승인 (예정)

## 2.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조직체계



- 대표: 권달주
- 부대표: 정기열, 박경석
- 이사: 임경미, 김용섭, 박대희
- 감사: 이형숙(사업), 권민희(회계)

## 3.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사업 경과보고

- 2022.04.17. 국회 권리보장 예산 중앙정부 책임강화 1회차 이동권 토론회 공동주관 및 참여
- 2022.04.17. 국회 시외이동권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공동주관 및 참여
- 영화 "출근길, 지하철 탑니다(감독, 장호경)" 배급 단체 확정
- 종로장애인인권영화제 공동주관 및 영화 "출근길 지하철 탑니다" 배급

## 보고안건2 기타보고

<주문 사항>

(사)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의 기타 사항을 보고합니다.

# 심의안건1

#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지부·지회 설립 건

〈주문 사항〉

(사)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의 지부·지회장을 추천해주시고 관련 계획을 승인해주십시오.

## 1.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지부·지회 건설 계획

- 지부는 서울, 경기, 인천, 충북, 대전, 세종, 경북, 경남, 대구, 강원, 광주, 전남, 전북, 총 13개 지역에 둔다.
- 해당 지역 중 임원진이 활동하는 지역은 임원진을 지부·지회장으로 지부·지회를 즉각 설립한다.
- 지부·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임하며 추천자의 동의 시 차기 이사회에서 승인한다.

## 2.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지부·지회장 현황 및 추천

구분	지역	성명	비고
확정	경기도	정기열	이사
	충청북도	임경미	이사
	강원도	김용섭	이사
	전라남도	박대회	이사
추천필요	서울특별시		
	인천광역시		
	대전광역시		
	세종특별자치시		
	전라북도		
	경상북도		
	경상남도		
	대구광역시		
	광주광역시		

## 심의안건2

#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단체 가입의 건

〈주문사항〉

(사)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단체 가입의 건에 관하여 의결해주십시오.

## <주문사항>

(사)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의 회원모집 및 회비운영 계획에 대해 의결해주시요.

### 1. 취지

- 1) 사단법인 설립의 주요 조건으로 사업을 통해 수입 구조를 창출, 단체 운영의 지속성 담보가 전제됨.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의 성격상 주요 수입은 회비로 충당될 예정. 따라서 회원모집 및 회비에 대한 규정을 조속히 신설하고 이를 추진할 필요가 발생
- 2) 관련 정관: (제5조) 법인의 회원은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지지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으로 한다.

### 2. 회원·회비 규정의 주요 내용

-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의 회원은 정관에 따라 개인으로 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.
-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의 하한선과 상한선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.
-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의 전신은 장애인이동권보장을 위한 연석회의, 장애인이동권연대,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동권위원회로 회원 모집 및 회비 납부는 장비회원과 연동하여 실시한다.
- 안정적인 회비 납부 환경 조성을 위해 조속히 CMS 계정 및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진행한다.



# 심의안건4 사무국 설치에 관한 건

〈주문사항〉

(사)전국장애인동권연대의 사무국 설치 계획과 총괄 및 사무국장의 임명을 의결해주시요.

## 1. 취지

- 1)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, 평가와 보고서 작성 등 사단법인의 일반 사업과 초기 안정화를 위한 지부·지회 건설 등을 위해 사무국의 건설이 시급함.
- 2) 관련 정관: (제45조) ① 본 법인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둔다.

## 2. 사무국 설치 주요 계획

-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동권연대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, 유리빌딩 5층에 둔다.
-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, 사무국원 3인으로 구성한다.
- 별도의 정례적인 회의 운영을 통해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동권연대의 운영방안 및 실무를 논의한다.

## 3. 사무국장 및 사무국원의 임명 요청안

구분	성명	비고
사무국장	이재민	실무 총괄
사무국원	한명희	법인운영 총괄
사무국원	서재현	
사무국원	성가연	

## <주문사항>

(사)전국장애인동권연대의 주관·주최 명의에 관한 건

### 1. 취지

- 1)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동권연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교통수단 및 도로 등 이동과 관련된 시설 및 환경에 대한 기준심사 시 협의를 위한 민관협의체로서 설립이 추진됨,
- 2) 국토교통부와의 관계 및 법인 운영 목적에 따라 주관·주최에 대해 신중히 기명해야한다는 의견을 박경석 부대표가 제안
- 3) 법인 사업계획 추진 및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관, 주최에 대한 예비적 가이드라인 설정 필요.

### 2.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동권연대의 주요 사업 내용

- 관련 정관: (제3조)

①법인은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장애인의 접근·이동권 보장을 위한 건축물, 여객시설, 교통수단, 도로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
2. 이동권의 개념 및 현황에 대한 관련 기관 실무자, 정책입안자, 국회의원 등에 대한 강의 및 교육
3.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 및 문화적 차별 제거 위한 대시민 캠페인
4. 장애인 이동권의 사회적 의제 확산 위한 관련 주제 사진전 기획 및 개최
5. 지하철, 버스, 특별교통수단 등 장애인의 이동 현실이 담긴 영화 촬영 및 보급
6. 장애인의 접근, 이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
7.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전문서적 및 당사자 사례집 출판
8. UN의 장애인권리협약(CRPD) 기반 정부 정책·현황 평가 및 민간보고서 제출
9.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정책 제안 및 향후 계획 논의 위한 민관협의체 참여
10. 기타 본 법인의 설립 목적 및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을 위한 자원조달 사업

## 심익안건6 기타 심의

〈주문사항〉

기타 심의 안전에 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 정 관

2022. 01. 24 재정

제1장 총칙

제2장 회원

제3장 임원

제4장 회의

제5장 총회

제6장 이사회

제7장 재산 및 회계

제8장 사무국

제9장 지부·지회

제10장 승인

제11장 해산

제12장 보칙

부칙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명칭)**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(이하 '법인'이라 한다)라 한다.

**제2조(목적)** 법인은 장애인의 이동권이 '자유권적인 기본권'임을 분명히 하며 건축물·교통수단·여객시설·도로 등의 물리적 구조 뿐 아니라 접근과 이동을 둘러싼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까지 포괄하여 장애물 없는 (Barrier-Free) 세상,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사업)** ①법인은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장애인의 접근·이동권 보장을 위한 건축물, 여객시설, 교통수단, 도로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
2. 이동권의 개념 및 현황에 대한 관련 기관 실무자, 정책입안자, 국회의원 등에 대한 강의 및 교육
3.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 및 문화적 차별 제거 위한 대시민 캠페인
4. 장애인 이동권의 사회적 의제 확산 위한 관련 주제 사진전 기획 및 개최
5. 지하철, 버스, 특별교통수단 등 장애인의 이동 현실이 담긴 영화 촬영 및 보급
6. 장애인의 접근, 이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
7.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전문서적 및 당사자 사례집 출판
8. UN의 장애인권리협약(CRPD) 기반 정부 정책·현황 평가 및 민간보고서 제출
9.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정책 제안 및 향후 계획 논의 위한 민관협약체 참여
10. 기타 본 법인의 설립 목적 및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을 위한 자원조달 사업

**제4조(사무소 소재지)** ①법인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에 둔다. ②법인은 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 및 도(이하 '시·도'라 한다)에 지부를 두고, 시·군·구('자치구'로 한정한다)에 지회를 둘 수 있다.

## 제2장 회 원

**제5조(회원 자격)** 법인의 회원은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지지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으로 한다.

**제6조(권리와 의무)** ①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.

1.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.
2. 회원은 법인의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다.
3. 본 법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
4. 본 법인의 모든 행사 참여에 우선권이 있다.
5. 본 법인에서 발간되는 간행물 또는 소식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.

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
1. 본 법인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2.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3. 제10조에 따라 규정에 의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의결권 및 선거권의 위임)** 각종 회의에 의결권이 있는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회의 개최 전에 사무처에 제출해야 한다. 단, 이사회인 경우 대리 행사할 수 없다.

**제8조(자격의 상실)** ①회원으로서는 정관 또는 제규정을 위반하여 법인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이사회인 의결을 거쳐 대표가 제명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회원으로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.

1. 회원이 사망 또는 실종된 때
2. 회원이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때
3. 소정의 회비를 납부 기한 내에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

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 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는 기 납부한 회비 등 기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
**제9조(회원의 탈퇴)** 법인의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
**제10조(회원 회비 등)** 회원별 회비의 가액과 납부 방법 등 기타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인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11조(상벌)** ①법인의 임원, 직원 또는 회원 중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는 이사회인 의결을 거쳐 대표가 표창하거나, 관계기관 및 주무관청에 보고할 수 있다. ②법인의 임원, 직원 및 회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인 의결로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
1. 법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부당이익 및 법인 명예를 실추한 경우
2. 업무상 배임, 횡령 등 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
3. 총회 및 이사회인 의결사항을 준수 또는 이행하지 않은 경우

③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
## 제3장 임 원

**제12조(임원)** ①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대표 1명
  2. 부대표 2명 이내
  3. 이사 7명 이내 (대표, 부대표를 포함)
  4. 감사 2명
- ② 법인은 필요한 경우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.

**제13조(임원의 선출 등)**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 ②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임원 중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. 이 경우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에서 보고한다. ③임원은 제5조의 자격을 가진 회원이어야 한다.

**제14조(대표)** 대표는 본 법인을 대표하고,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회의장이 된다.

**제15조(부대표)**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고 대표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16조(이사)**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, 이사회에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**제17조(감사)** ①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.

1. 본 법인의 재산 또는 회계 그리고 업무집행상황의 감사
2. 이사회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처에 보고
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에의 소집을 요구
5.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대표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.

②감사는 의결권이 없다.

**제18조(고문 등)** ①법인에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이사회에의 동의를 얻어 대표가 추대한다. ②고문 및 자문위원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의 자문에 응한다

**제19조(대표권의 제한)** 본 법인은 대표 이외의 자는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. 다만, 대표가 필요에 따라 부대표에게 위임한 사안에 한하여 부대표은 이 법인을 대표한다.

**제20조(임원의 보수)**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**제21조(임원의 임기 등)** ①법인의 대표, 부대표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. ②보선에 의해 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## 제4장 회 의

**제22조(회의 종류)** ①법인은 다음의 회의를 둔다,

1. 총회
2. 이사회

**제23조(제척사유)** ①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회의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다만, 이 경우 회의에서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.

1. 임원의 선임·해임에 있어서 그것이 자신에 관한 사항인 경우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경우
3. 이사회회의 의결 사항 또는 총회에 부의할 사항으로서 그 건이 자신에 관한 것일 경우

## 제5장 총 회

**제24조(총회의 구성과 소집 등)** ①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전체 회원이 의결권을 지니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,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.

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이내에 개최한다.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제25조에 따라 소집요구 발생 시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.

③대표는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, 안건, 일시 및 장소를 포함한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25조(총회소집의 특례)** ①대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17조 제1항 제3호,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3. 재적 회원 3분의 10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
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0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**제26조(개회 및 의결)** ①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의사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정관 변경은 재적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의장은 의결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에 부결된 것으로 한다.

**제27조(의결 사항)** ①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


2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 승인
4. 사업 계획의 승인
5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6. 주요 재산의 처분, 매도, 증여 및 담보 등의 승인
7. 목적사업을 위한 외부단체 또는 법인의 출자나 용자 등의 승인
8. 기타 대표가 중요하다고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

**제28조(의결정족수)** ①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.

**제29조(의결제척사유)** 의결제척사유는 제23조에 준한다.

**제30조(의사록의 보존)** ①총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의사의 경과 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.

## 제6장 이 사 회

**제31조(구성 및 구분)** 이사회는 대표, 부대표 및 이사로서 구성하며,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.

**제32조(이사회 의 소집)** ①정기이사회를 연2회 개최하며, 대표가 소집한다. 다만, 부의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임시 이사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.

③임시이사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개최하여야 한다.

④대표는 제2항과 제3항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⑤대표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목적, 안건,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서면(전자문서등 포함)으로 통지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

있다.

**제33조(의결사항)**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
2. 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4. 결원된 이사의 보궐 선출에 관한 사항(대표와 감사는 제외한다).
5. 지부·지회 설치/폐지 및 이전에 관한 사항
6. 수익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
7.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
8.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9. 회원의 가입 및 징계에 관한 사항
10.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가 부의하는 사항

**제34조(서면결의)** 대표는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및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결의 할 수 있다. 이 경우, 대표는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35조(의결정족수)** ①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②이사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 ③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.

**제36조(의결제척사유)** 의결제척사유는 제23조에 준한다.

**제37조(의사록의 보존)** ①이사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의사의 경과 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②의사록에는 회의 경과 사항과 결과를 기재하고, 의장과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3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 ③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.

## 제7장 재산 및 회계

**제38조(재산의 구분)** ①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 ②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2와 같다.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**제39조(재산의 관리)** ①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③법인의 재산수입은 정관상 목적사업의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. ④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본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.

**제40조(재원)** ①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

1. 회비
2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
3. 각종 기부금
4. 수익사업 수익금(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,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 확대,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)
5.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
6. 기타

②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41조(회계년도)**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**제42조(예산편성 및 결산)** ①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 다만,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②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 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

**제43조(회계감사)**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44조(차입금)**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## 제8장 사 무 국

**제45조(사무국)** ①본 법인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둔다. ②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결을 얻어 대표가 임명한다. ③사무국의 직제·운영·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## 제9장 지부·지회

**제46조(지부·지회의 설립 등)** ①본 법인은 지부·지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②지부·지회의 설치 **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등기를 수행한다.** ③기타 지부·지회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 ④지부 사무국에 대한 구성은 제45조에 준한다.

## 제10장 승 인

**제47조(승인)** ①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정관의 변경
2. 기본 재산의 양도·담보·임대·교환 및 채무 부담 행위 등
3. 목적 사업 달성을 위한 수익 사업
4. 법인의 해산

## 제11장 해 산

**제48조(해산)** ①법인은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해산 결의를 목적으로 한 임시총회 소집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②법인의 해산은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49조(청산인)**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대표가 청산인이 된다. 다만,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 중에서 이를 선임할 수 있다

**제50조(잔여 재산 처리)**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고,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.

## 제12장 보 칙

**제51조(준용규정)**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「국토교통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

**제52조(운영 및 규칙 제정)** 법인의 운영 및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본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본 법인의 초대임원 및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본 법인의 창립총회에서 선출 또는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2022년 1월 24일

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